

<說 苑>

# 動物檢疫에 關한 小考

金 炳 星

## 1. 序 言

動物檢疫은 動物이나 畜産物의 輸入으로 因하여 外國으로부터 傳染病의 侵入을 未然에 防止하고 輸出에 있어서는 傳染病에 罹患되지 아니한 健康한 動物이나 畜産物만을 輸出하고 또한 輸入國側의 檢疫要求條件을 充足시켜 海外 市場에서의 國家信用度를 確保하는데 있다고 본다.

이러한 見地에서 國際間의 動物 및 畜産物의 輸入에 있어서 尙상 以外로 複雜하게 다루어지는 問題의 하나가 動物檢疫이라 말 할수 있다.

動物이나 畜産物을 輸入할때에는 輸出國家側의 家畜 傳染病 發生狀況 및 그나라의 防疫 實施狀況이나 檢疫 實施狀況 등을 充分히 檢討하고 自己 나라의 實情과 比較하여 安全한 檢疫條件下에 輸入을 實施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輸出에 있어서도 自己 스스로가 輸出動物 및 畜産物의 衛生檢査와 檢疫을 徹底히 實施하여 國際信用度를 높이는 方便 購入國側의 提示한 檢疫要求條件을 誠實히 履行하여 檢疫으로 因한 畜産物 輸出振興상의 차질을 未然에 防止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나라는 勿論 世界各國은 위에 말씀드린 여러問題點을 解決하기 爲하여 動物檢疫所를 設置하거나 檢疫法을 制定하여 一定한 期間의 居留檢疫, 複雜한 輸送條件의 提起, 豫防注射나 各種 血液學的, 細菌學的 檢査實施의 要求 및 그結果에 關하여 輸出國 政府가 保證하는 內容의 衛生 또는 檢疫 證明書의 要求, 原產地 證明書의 添附, 特定地域內의 特種動物 또는 畜産物의 輸入禁止, 燒却, 消毒, 反送, 隔離, 輸出國의 防疫實施 現況 및 檢疫施設 또는 制度를 調査하기 爲한 海外 派遣, 販賣國側의 傳染病 發生에 關한 情報提供의 義務化 등 各種 方面으로 注意를 기울리 하지않고 있는 것이다.

現行 動物檢疫은 人體檢疫의 境遇와 달라 같은 檢疫物이 輸出入 兩國에 依하여 二重의 實施되고 있기때문에 輸出入되는 檢疫物의 荷主에게 큰 不便을 招來하고 있음으로 二重複性을 避하기 爲하여 國際共通의 檢疫方法이나 檢疫證 記載內容의 標準化 등을 制定하기

爲하여 本部를 佛國 巴里에 둔 國際獸疫 事務局에서는 每年 會議가 있을때마다 重要 討議 案件으로 論議되고 있다.

그러나 O. I. E— F. A. O— W. H. O의 專門機構가 公認하고있는 家畜傳染病의 種類만 하더라도 120餘種이며 其中 約 80餘種이 人獸共通傳染病으로 認定되고 있을만큼 傳染病의 種類가 廣範圍하며 또한 傳染病의 發生狀況과 그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이 地域別, 國家別, 傳染病類別로 各기 크게 差異가나는 同時에 國家別로 衛生 또는 經濟水準이나 風習에 큰 差異가 있으므로 이의 一律化는 極히 힘든것으로서 于今것 이렇다한 成果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家畜衛生에 關한 國民水準 및 生活 習慣이 各기 다른 異邦國間에 있어서 兩國 國民이 서로 滿足할만한 檢疫을 實施한다는것이 容易한 일인 아닌것은 能히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 있다.

우리나라도 畜産物 輸出振興을 計劃하고 있는 以上 앞으로 보다 廣範圍한 海外市場의 開拓에 隨伴하여 檢疫의 重要度도 加一層 그責任이 加重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나라의 現行檢疫 實施狀況 및 施設 등을 概略의 으로 考察하고 아울러 檢疫은 그性格 上으로부터는 外國의 防疫이나 檢疫實情에 넓은 知識이나 經驗이 要求되는 것이므로 參考로 輸出入의 相對方이 되는 海外重要 各國의 資料를 入手한中 代表의인 나라의 檢疫現況 또는 家畜衛生狀態나 檢疫上의 問題點 등을 選擇하여 比較考察하여 보고저한다.

## 2. 우리나라의 檢疫實施現況

우리나라는 三面이 바다로 싸여 家畜傳染病의 國外으로부터의 侵入을 防止하는데 地理的으로 어느나라보다 理想的인 立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분단아니라 家畜이나 畜産物의 輸出入量도 그리큰 數도 아니므로 이와같은 좋은 環境下에 徹底한 防疫을 繼續實施한다면 그結果 여러가지 種類의 傳染病이 根絶될수 있고 따라서 앞으로 家畜이나 畜産物의 輸出入量이 增加된다 하더라도 國內防疫보다도 오히려 輸入港口에서 實施하는 檢疫面에 置重하여도 防疫實施의 所

期的 目的을 達成할수 있다는 確信을 가질수있다고 生  
覺됩니다.

現在 그病이 그나라에 發生되던 안되던 世界 共通的  
으로 重要視되고있는 主要 傳染病中 代表的인것은 牛疫  
口蹄疫, 牛肺疫, 炭疽, 氣腫疽, 結核症, 부루세라症,  
羊痘, 狂犬病, 鼻疽, 媾疫, 豚코레라, 뉴-켓슬病, 卒  
白痢病, 아프리카馬病 等を 例舉할수 있으며 이中 特히  
牛疫, 口蹄疫, 牛肺疫, 鼻疽等이 發生되고있는 나라는  
國內 畜産振興面으로나 畜産物의 對外輸出面으로 莫甚  
한 經濟的 損失을 받고 있으므로 하루 速히 이病의 發  
生을 終息시키고저 努力하고 있으며, 一面 위와같은  
傳染病의 發生이 없는 나라는 國外으로부터의 侵入을  
憂慮하여 이를 미리 防止하고자 많은 犧牲을 무릅쓰고  
家畜이나 畜産物의 輸入을 禁止하거나 또는 輸入港口나  
輸出國에 獸醫檢疫官을 派遣하여 萬全을 期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傳染病 發生狀況을 불때에 于先 牛疫, 口  
蹄疫, 牛肺疫, 鼻疽等의 發生이 없는點을 例舉할수 있  
겠습니다.

그런나 日本, 臺灣, 美國, 캐나다, 뉴-지랜드等 몇  
個國家를 除外한 歐羅巴, 亞細亞, 南美, 大洋洲 等の  
大部分의 地域에서는 于今껏 前記傳染病의 大部分 또  
는 一部가 發生되고 있으며 特히 香港, 蒙古, 滿洲, 中  
共等の 隣接國이나 歐羅巴地域으로부터의 牛肺疫, 牛  
疫, 口蹄疫等의 國內侵入 防止에는 非常한 警戒를 하  
여야 될것으로 믿읍니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 農林部 當局은 農林告示 108  
號로서 歐羅巴, 日本, 臺灣을 除外한 其他 亞細亞 地域  
및 中南美 各國으로부터의 偶蹄類의 動物 및 그畜産物  
의 輸入을 禁止토록하고 滿洲國으로부터는 牛肺疫 防  
疫上 牛 및 牛肉類를 輸入禁止토록 強力한 檢疫措置를  
漸行하고 있습니다.

한편 外國에서는 獸醫傳染病의 分野가 急性傳染病도  
重要視되지마는 慢性傳染病이나, 消耗性疾病인 寄生蟲  
病 및 野生動物에 關한 傳染病 調査 및 對策樹立 등이  
나 動物 虐待防止 運動等에 置重되고 있는 感이 있는  
데 比하여 우리나라는 于今껏 急性傳染病이나 몇가지  
의 慢性傳染病에 關한 防疫만으로도 汲汲하고있는듯한  
感이 있습니다.

家畜防疫을 圓滑하게 遂行하기 爲하여는 于先 國內  
防疫狀況도 重要하지마는 外國의 傳染病 發生狀況이나  
防疫實施 狀況도 迅速正確하게 알수있도록 制度化되여  
야하고 또한 外國이 우리나라의 實情을 正確하게 理解  
할수있도록 外國과 情報를 交換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1953年 11月 18日에 佛蘭西 巴  
에 있는 國際獸疫事務局(Office International Epi-  
oties)에 正會員國으로 加入하여 每年 美貨 約 749萬  
分擔金을 該機構에 納付하고 있습니다.

本機構의 規約에 따라 우리나라에 牛疫이나 口  
蹄疫이 發生되었을 境遇에는 그發生 및 防疫措置 狀況을  
該機構에 電文으로 緊急 通告하여야하며, 牛疫, 口蹄  
牛肺疫, 炭疽, 羊痘, 狂犬病, 鼻疽, 媾疫 豚코레라  
의 發生狀況을 常時 通報토록되어 있습니다.

國際獸疫事務局에서는 各國으로부터 보내온 이通  
를 蒐集整理하여 70餘 會員國 및 W.H.O, F.A.O  
國際航空協會等 機關에 隨時로 配付하고 있습니다.

또한 外國의 檢疫實施 過程을 分類하여 불때에 檢  
物이나 畜産物이 外國에 輸出되려머는 于先 動物인  
우에는 牧場內에서 道間이나 州間 移動法에 依하여  
荷前에 結核症이나, 부루셀라症, 卒白痢病의 檢査  
他 豚코레라, 렐토스키라症 等の 豫防注射를 該地  
의 公獸醫師나 公設 家畜保健所에 依하여 畢한後 證  
書를 添附하여 海空港 檢疫所 또는 阜頭에 運搬과  
一定時間을, 美國의 境遇에는 8時間을 法에 依하여  
憩시키고 그동안에 檢疫官이 肉眼의 檢査와 片面檢  
査를 實施하여 船積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檢査에는 輸出 檢査物의 用途에따라 種畜用이  
即時 屠殺用이나에 依하여 檢査方法에 差位가 있으  
른은 犬을 輸入하는 境遇에는 一般 家庭用 愛玩用인  
警備用인가 또는 牧場用인가를 區分하고 牧犬으로  
牧場에서 使役되는 犬인 境遇에는 狂犬病 以外에 羊  
에서 重要視되는 內外寄生蟲에 對한 補充檢査를 實  
하게 됩니다.

또 冷凍肉類를 州外나 國外로 輸出하는 境遇에는  
物移動法에 依하여 飼育地에서 移動되기에 앞서 牧  
內에서의 必要한 獸醫學的 檢査를 畢한後 屠畜場에  
屠畜檢査官으로 하여금 生體 및 解體檢査를 實施한  
음 그 合格證明書를 添附하여 動物檢疫所에서 檢査  
를 交付받아 輸出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外國에서는 檢疫이 다만 港口에서만 實  
되는것이 아니고 生産牧場에서부터 이미 防疫이나 生  
檢査가 實施되기 始作하여 輸出港口에서 動物檢疫  
은 輸出檢査物을 輸出함에 있어 위와같은 諸般規定  
에 依한 檢査나 其他 必要한 措置를 畢하였는가의 與  
및 購入國側의 檢疫要求條件의 履行與否를 充分히 考  
討한다음 最終的인 檢査를 畢하여 檢疫證을 發付하  
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輸出量의 增加에 따라 購入國側의 要

있을때에는 위와같은 措置를 取하고 있으나 于今것  
을 위한 實質的인 國內家畜 移動法이 法律로서 規定  
되어 있지아니하여 傳染病 發生의 原因究明이나 檢疫實  
施에 多少의 複雜性도 있는것으로 믿읍니다.

外國의 어떤나라에서는 檢疫을 以단 輸出入動物 및  
畜産物에만 限하여 實施하는것이 아니라 國內 消費用  
으로 州間 또는 道間에 移動되는 動物이나 畜産物에 對  
하여도 檢疫을 實施하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이와같은  
制度는 우리나라의 畜産振興, 防疫規標의 改善, 輸出  
되는 畜産物의 增加에따라 兪전가는 深刻히 考慮되  
야 할것으로 믿읍니다.

現在 우리나라는 國立動物 檢疫所가 釜山 松島에 位  
하고 있으며 서울支所가 서울에 設置되어 있으며 動  
物 및 畜産物을 輸入할수 있는 港口는 釜山港, 仁川港  
金浦空港으로 制限되어 있습니다.

이 動物 檢疫所는 西紀1909年 7月 12日에 舊韓國 農  
工部所管으로 輸出中の 檢疫用으로 創設되어 現在에  
두고 있으며 日政時 對日韓牛 移出檢疫用으로 利用  
하였다가 解放後 한때는 輸出入 檢疫 業務量이 적어  
業務이 小規模狀態에 있었으나 過去 4~5年前부터 生  
豚, 豚毛, 牛骨의 輸出, 乳牛 導入 등으로 急速히 業務  
이 擴大되었으며 이는 將來에 있어서도 輸出振興 政  
策의 影響을 받아 繼續 業務量이 增加 또는 檢疫實施  
額이 強化될 것으로 生覺됩니다.

釜山에 所在하고있는 現檢疫所는 二位置로보아 工業  
帶나 都心地帶에서 隔離된 家畜防疫上 極히 有利한  
條件에 있으며 그敷地가 22,204坪이며 林野가 196,568  
坪으로서 檢疫物의 收容能力은 牛 294頭 豚이 1,565頭  
15頭를 同時收容 할수있는 分離된 畜舍로서 構成되  
고 있습니다.

이외에 輸出用에 限하여 生豚檢疫用으로 釜山市 郊  
외에 6,300頭의 生豚을 拘留 檢疫 할수있는 5個所로  
분된 生豚檢疫 施行場所가 있습니다.

이는 農林部 獸醫當局에 依하여 許可된 것으로 모든  
業務 및 管理는 政府檢疫官 指揮下에 있습니다.

動物이나 畜産物을 輸出入하고자 할때에는 所定樣式  
에 依한 檢疫申請書를 國立動物 檢疫所長앞으로 申請  
하여 家畜傳染病 豫防法에 規定되어 있는 所定期間을  
拘留 檢疫하거나 畜産物인 境遇에는 그에 適切한 消毒  
- 實施하여 家畜傳染病에 羅患되지아니 하였거나 또  
- 羅患된 疑心이 없는것에 限하여 檢疫 證明書를 荷  
主앞으로 發行하여 이 證明書를 가지고 稅關에가서 通  
手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檢疫 拘留場에 拘留하기 힘든 動物이나 初生추 등은

他所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輸入時에는 必히 輸出國의  
政府가 發行한 原產地가 表示된 檢疫 證明書를 携帶하  
지 아니하면 輸入할수 없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檢疫物의 荷役, 飼養 管理 등은 檢疫官 監督下에 實  
施되어 檢疫官은 獸醫師 資格所有者 입니다.

冷凍 兔肉, 豚毛等 檢疫物은 檢疫所內 檢疫이 不可  
함으로 農林部 當局의 承認을 받아 製造工場에서 檢疫  
을 畢한後 輸出港口에서 最終的인 再確認 檢疫를 實施  
하고 있습니다.

檢疫申請人은 所定の 檢疫 手數料를 國庫에 納入하  
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重要畜産物 輸出入現況은 다음과 같습니  
다.

年度別 重要 畜産物 輸出入(檢疫) 現況

		單位	1960	1961	1962	1963
輸 入	生豚	頭	20,334	67,521	38,991	114,543
	毛皮	株	61,441	209,448	109,731	108,909
	獸毛	kg	191,844	249,281	180,954	247,533
	牛骨	%	3,576.6	1,202.7	1,920.8	2,218.6
輸 出	卵類	個	101,204		448,730	2,261,720
	肉類	kg	102	600	43,182.6	395,031.2
	家畜	頭	237	495	1,209	587
	羊皮	kg	—	—	—	3,996
	家禽	首	505	504	1,850	1,100
	卵類	個	2,000	—	28,070	509
	原皮	kg	1,347,927	1,026,010	1,159,414	485,926
	肉類	kg	—	—	—	1,040

### 3. 海外各國의 檢疫實施 現況

海外各國의 實情에 對하여는 앞서 우리나라의 檢疫  
實施 現況과 重復되는 點이 많으므로 總括的인 考察은  
省略하고 各國別로 具體的으로 實例를 招開하겠습니다.

핀란드·이나라는 南쪽과 西쪽이 바다이며 北東쪽에  
카다란 도니온소기江이 흐르고 있어 家畜傳染病 侵入  
防止에 極히 有利한 地理的 條件을 가진 나라이라고 하  
겠습니다.

約 100年前에 輸入牛에 依하여 牛肺疫이 侵入되었  
고 其後 亦是 輸入牛에 依하여 부루셀라病이 侵入되었  
었고, 一次大戰中 소련將敵의 犬에서 狂犬病이 軍馬에

서 鼻疽가 發生되었고, 結局 時日이 經過됨에 따라 口蹄疫까지도 侵入되었읍니다.

그後 이나라는 防疫의 効果를 거두어 牛의 부루셀라病과 結核病을 根絶시키게 되었으며 過去 10年間に 鼻疽, 假性結核, 豚코레라, 家禽페스트, 家禽코레라 등의 發生이 없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實情으로보아 이나라의 家畜防疫當局은 國內防疫의 한 手段으로서 外國으로부터의 새로운 傳染入의 再侵入를 豫防하기 爲하여 輸入檢疫에 相當한 關心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推測 됩니다.

이나라의 畜產物 輸出入은 主로 性能이 優良한 乳牛의 輸出이 右望視되고 있으며 輸入에 있어서는 거의 白給白足 狀態에 있어 다만 少數의 馬類, 種畜用의 若干의 肉用牛種, 肉加工品이나 愛玩動物 程度라 하겠읍니다.

1937年에 처음으로 輸入 檢疫關係法이 制定되어 1955年에 補強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內容을 簡單히 考察하려는 爲해서 定府는 家畜傳染病上 必要時에는 動物이나 畜產物의 輸入에 制裁를 加할수 있으며 거의 部分의 動物이나 畜產物은 輸入檢疫의 節次를 거쳐야 輸入될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檢疫對象物은 우리나라와 거의 恰似하여 家畜으로부터 骨, 皮, 羽毛, 蹄角, 血粉, 精液에 이르기까지이며 우리나라와 多少差異가 있는 點은 肉類에 있어서는 重量 5 kg 以下는 檢疫을 實施하고 있지 아니며, 畜產物로서 製造된 凍조림, 크리-두 등이 指定 檢疫物로 規定되어 있으며, 豚脂, 牛脂等은 該製造 工場에서 製造될때에 80°C 以上으로 處理 되었다는 內容의 製造工場側이 發行한 證明書가 있어야 輸入이 許用되고 있습니다.

鯨油나 其他 動物性 油脂는 檢疫對象에서 除外되고 있습니다.

犬이나 猫輸入에 있어서는 狂犬病과 디스텔과 豫防注射을 到着前 3週日 以內에 實施한 證明이 있어야 輸入이 許可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에는 動物檢疫所가 別途로 設置되어 있지 아니며 農務省 獸醫局에서 直接 檢疫事務를 管掌하고 繫留檢疫이 必要할때에는 農務省當局의 指示에 依하여 所定의 期間을 其時 其時 適當한 場所에서 實施하고 있습니다.

佛蘭西·이나라는 動物이나 畜產이 國外로 輸出入될 때에는 勿論 國內에서 州間에 移動時에는 法律에 따른 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動物 檢疫所는 그位階의 適合性 與否가 重要視 됨으로

로 傳染病 傳播防止上 理想的인 隔離收容을 할수있- 例컨데 小島等에 設置함을 原則으로 하고있으며 檢物의 運送, 飼養管理等에도 恒常 檢變當局의 指示- 받게되어 있습니다.

現在 佛蘭西에는 佛國 西海岸 尖端의 海港인 부레- 트市에 檢疫所가 設置되어 있으며 200頭의 牛를 一區收容할수있는 規模로서 이地帶는 都心地나 工業地帶는 完全히 隔離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檢疫所는 50頭式 收容할수있는 完全히 隔離된 4區區劃으로 區分되어 있습니다.

丁抹·이나라는 周知하지는 바와같이 畜產國으로서 畜產物을 主로 輸出만하는 나라입니다. 1961年度의 畜畜 및 畜產物의 輸出入 統計를 보려는 다음과 같읍니다.

輸入; 馬 658頭, 牛 90頭, 豚 0頭 緬羊 및 山羊 40頭  
輸出. 馬 29,891頭 牛 369,943頭(이中 6,298頭는 種畜用이고 其他는 屠殺用이었음) 豚 179,450頭 緬羊 및 山羊 0頭, 馬肉 11,042頭分 牛肉 925,194頭分 (成牛, 犏牛, 哺乳中인 犏牛等) 豚肉 9,555,250頭分, 緬羊 및 山羊肉 33,758頭分, 鷄肉 57,000頭

이나라의 輸出入 動物 및 畜產物에 關한 主要內容의 輸出關係 規程은 다음과 같읍니다.

1. 丁抹政府 獸醫室은 輸出用 馬 및 偶蹄類 家畜에 對하여 傳染病 豫防上 및 健康을 爲하여 必要한 制裁를 加할수 있으며
2. 政府는 輸出되는 種畜用 牛 및 精液에 對하여 健康性을 保證하여야하며,
3. 種豚 및 그精液의 輸出은 禁止되어 있고
4. 위에 말한 各動物에 對하여 獸醫健康 診斷書를 發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關하여 좀더 具體的으로 考察하여 보던 위의 第1項에서 말씀드린 檢疫은 原產地나 또는 輸出用 畜畜市場中 一個所에서 政府 獸醫官에 依하여 個體別로 實施합니다.

其結果 傳染病에 罹患되었거나 或은 傳染病 汚染地帶 特別 口蹄疫等으로 因한 地帶 또는 그 隣接地帶의 것은 輸出 또는 市場出荷가 禁止 됩니다.

汚染地帶內의 家畜을 屠殺하고자 할때에는 政府 獸醫官의 檢査를 받으며 그檢査方法은 부루셀라病, 結核病, 白血病等 各己 疾病에 따라 適宜한 方法을 쓰고 있습니다.

輸出專用 家畜市場은 每週一回式 開場되어 이市場은 農務省에 登錄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輸出되는 大部分의 馬, 牛, 豚이 이 市場을 通하고  
으며 다만 種畜牛 또는 極小量의 屠殺用 家畜은 原產  
에서 直接 輸出港口로 運送되는 例도 있습니다. 輸  
用 種牛에 限하여는 必히 輸出港口 近方이나 其他  
宜한 場所에서 繫留 檢疫을 畢하여야하나 其他 動物  
通常時에는 繫留하지 않고 있으며 畜牛는 一般屠殺  
家畜과 隔離繫留하고 있습니다.

現在 丁抹에는 14個所의 輸出指定 港口가 있는데 그  
部分이 海港이며 其他는 鐵道驛이거나 或은 種牛에  
하여는 空中 運送을 하는 例가 있습니다. 輸出 專用  
畜市場은 54個所이며 1回 開場에 去來되는 家畜數는  
日 一個所當 大動物로 平均 400~2,000頭 입니다.

輸出專用 家畜市場은 風雨를 避할수있는 지붕이 있  
아하며 家畜上下車臺가 設置되어 있어야하며 開場日  
清掃 및 消毒을 實施하여야하며 모든 施設은 消毒車  
依하여 清掃 및 消毒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作業은 定例의으로 政府獸醫官 監督下에  
施되어야 합니다.

輸入專出用 特別家畜市場은 丁抹와 獨逸 國境線인  
드보-쿠市에 設置되어 있어 여기에는 224頭의 馬나  
等 大動物을 鐵道貨車에 積載 할수있는 地붕이 덮인  
下車臺가 마련되었고 種牛 100頭를 收容할수있는 畜  
1棟과 合計 440頭의 成牛를 收容할수있는 牛舍 1棟  
10頭式을 隔離 收容할수있는 隔離 牛舍가 5棟이 있  
니다.

家禽類 輸出에 있어서는 1940年 2月 9日字 農林省  
示에 依하여 雄鷄, 雌鷄, 食用去勢雄鷄, 初生雛, 七  
鳥, 鴨等은 農務省 當局에서 公認받은 養鷄場것에  
하여 疾病에 罹患되지 아니한 健康鷄임을 證明하는  
容의 獸醫 檢査證明書を 添附하여 輸出되고 있습니다.

種鷄, 種鷄用 初生雛 및 孵化用 種卵을 輸出할때  
는 輸出者는 반드시 國立 家禽育種委員會의 監督을  
고있는 養鷄場에서 生産되었다는 內容의 原產地 證  
과 政府 獸醫官이 主白痢, 家금티프스, 其他 살모  
-라症, 및 뉴켄슬病에 罹患되지 아니하였다는 內容  
檢査證을 携帶하여야 합니다.

單蹄類 動物은 原產地 國家의 家畜傳染病 發生狀況  
참작하여 惡性傳染病이 發生되고있는 나라로부터의  
入은 禁止되고 있습니다.

單蹄類가 國內에 到着되려는 그即時 血液檢査, 마테  
反應을 實施하며 同時에 馬인 境遇에는 其血統 및  
能이 優秀하여야 輸入될수 있습니다.

牛, 羊, 豚 其他 偶蹄類의 動物은 單蹄類 動物의 境  
況같이 惡性 傳染病이 發生되고있는 나라로부터의

輸入은 禁止되어 있습니다.

偶蹄類 動物이 到着되려는 檢疫所에 2~3 週間 繫留  
되어 慢性傳染病에 對한 檢査를 實施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繫留檢疫 施設은 丁抹內에 3個所가 設置되어 있  
습니다.

豚은 輸入이 禁止되고 있습니다. 犬 및 猫의 輸入에  
있어서는 스칸디나비아 各國은 特別 協定이 規約되어  
있으므로 獸醫健康證明書を 携帶한 境遇에는 6週日間  
까지는 無檢疫으로 相互往來 할수있습니다.

그러나 非協定國으로서 狂犬病이 發生되지 아니한  
나라로 부터의 輸入時는 輸入港에서 獸醫學的 檢査가  
實施된後 輸入 許可되고 狂犬病 發生國家로 부터의 것  
은 狂犬病 豫防注射을 畢한다음 코펜하-겐 所在의 特  
設檢疫所에 6週日間 繫留하게 됩니다.

野生兎 家兎 및 그毛皮는 輸入이 禁止되어 있으며,  
毛皮用 草食動物, 뉴-트리아 및 잔지라 등은 農務省當  
局의 特別許可가 있어야 輸入할수 있습니다.

家禽輸入에 있어서는 鷄, 鷄, 七面鳥, 孔雀, 鴨, 鳩  
鴉, 메추리系統의 鳥類는 生體이든 屍體이든 如何한  
形態로도 輸入이 禁止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特殊한 種鷄用 初生雛는 檢疫所에서 6個月間  
飼育試驗 및 獸醫學的 檢査 結果 그優秀성과 側康성이  
證明한 것으로 個人이 아닌 國立 家禽育種 委員會의  
公認을 받았을 境遇에 限하여 輸入을 許容하고 있습니  
다.

오-무屬鳥類 및 如何한 種類의 鳥類도 이의 輸入이  
禁止되어 있습니다.

雄鷄, 雌鷄 中雛, 去勢한 食用雄鷄, 七面鳥, 鴨, 鳩  
鴉 등의 肉類의 輸出은 農務者이 許可한 屠鷄場에서 屠殺  
되어 內臟을 除去하고 不必要한 部分은 切斷하고 또는  
동조림化 하거나 其他 輸入國側의 注文內容에 알맞는  
形態로 만든것만이 獸醫官 監督下에 輸出되고 있습니  
다.

馬, 牛, 羊, 豚 및 家禽의 斃屍體나 或은 그로부터  
分離하여낸 肉類 等은 原皮만을 除外하고는 全量을 人  
體用으로 使用하지 않고 있습니다. 屠鷄場內에서 分離  
하여낸 屠肉이나 屠物들은 獸醫官 監督下에 農務省이  
許可한 化製場에 運搬되어 脂肪分을 抽出하는 等의 精  
製作業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馬, 牛, 羊, 豚의 生肉의 輸入은 스칸디나비아 國以  
외의 地域으로부터는 輸入이 禁止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惡性 傳染病 發生이 없는 地域으로부터는 特  
別 許可를 얻어 輸入할수 있으나 이境遇에는 輸出國  
獸醫官의 그生肉의 生體 및 屠體 檢査 證明書を 添附

하도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生肉이 國內에 到着되며는 新鮮度와 살모네라菌에 關한 檢査를 實施 합니다.

肉통조림을 輸入하는 境遇에는 世界 어느나라로부터에서도 輸入은 할수있으나 輸入許可 以前에 殺菌度 試驗을 實施한 後 그成績에 따라 許可하고 있습니다.

原皮 및 皮類 輸入 檢査時는 完全히 自然 乾燥되었는가의 與否, 鹽漬되었을 境遇에는 鹽漬後 最少限 14日間이 境遇 되었나 의 與否 및, 그 鹽漬實施 狀況을 證明하는 文書의 所持 與否를 檢査 합니다.

脂肪質이 많은 毛類, 牛나 豚의 原毛 精製되지 아니한 牛脂等은 輸入이 禁止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特殊한 目的인 境遇에는 輸入을 許容하고 있습니다.

殘飯, 牛乳, 乾草, 藁, 動物性 肥料 輸入은 禁止되어 있습니다.

肉粉, 骨粉, 魚粉의 輸入은 輸入後 再殺菌하지 아니하며는 輸入이 許容되지 않습니다.

魚粉의 輸入에 關한 許可는 獸醫當局에서 實施하고 있으며 生魚類, 魚肉物 및 蜜蜂의 輸出入 取扱事務는 獸醫當局 所管에서 除外되고 있습니다.

英國・英國은 檢査期間을 決定하는에는 該傳染病의 潛伏期 및 臨床的이나 實驗室 檢査에 所用되는 日數를 考慮하여 決定 짓고 있습니다.

1 輸入檢査 現況

㉔ 反芻動物 및 豚은 愛蘭, 가나다等 極少數國을 除外한 其他 地域으로부터는 血統이 動物과 展示用 其他 特殊用에 限하여 輸入하도록 1950년에 公布된 動物疾病法에 規定되어 있습니다.

1) 血統이 登錄된 動物의 輸入檢査에 있어서는 輸出國에서 干先 檢査를 實施한다음 英國內에 있는 許可 받은 私設檢査所에 계留 됩니다.

그러나 間或 런던 國立檢査所가 輸出入 動物을 爲하여 利用되는 境遇도 있다고 합니다.

檢査所는 다음과 같은 事項을 遵守하여야 합니다.

가) 不必要한 사람의 檢査所內의 出入을 禁止시키고

나) 檢査所內에서 勤務하는 사람은 衛生服을 着用할 것이며 出入時마다 衣服 및 신발을 消毒하여야 한다.

다) 動物의 糞尿는 消毒後에 檢査所 外部로 搬出함.

라) 檢査所內에서 斃死되었거나 法에 依하여 殺된 動物은 廢棄하여야 한다.

마) 政府는 殺處分된 動物에 對하여 補償치 않는 다.

바) 荷主는 檢査 手數料 및 管理費를 支拂하여야 함.

2) 展示用 動物의 輸入檢査는 輸入後 第一次 檢査를 都會地의 動物園에서 28日間을 받습니다.

이 境遇에 부루-단그病 등이 發生하는 地域부터 輸入하였을 境遇에는 媒介昆蟲을 完全 驅除하기 爲하여 56日間을 계留하여 驅蟲을 實施합니다.

이와같이 第一次 檢査 28~56日間을 實施한다음 第二次 檢査를 같은 都會地의 動物檢査所에서 11個月間 實施한다음 地方動物園에 開放됩니다.

㉕ 馬의 輸入 檢査 規程은 別途로 없으며 아프리카 馬病等의 發生地區로부터 輸入되는 境遇는 該當傳染病에 罹患되어있지 아니하다는 內容의 檢査 證明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㉖ 犬 및 猫의 輸入檢査

英國에 輸入되는 모-든 犬 및 猫은 6個月間을 檢査所에서 檢査를 畢한다음 開放됩니다.

犬 猫의 檢査를 爲하여 設置된 檢査所는 全國에 36個所가 있으며 이는 全部 私設이나 政府獸醫官이 最少一日一回 以上 訪問하여 徹底한 政府의 監督을 받고 있습니다.

이 檢査所은 다음과 같이 法에 依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1) 檢査所가 都會地에 所在하던 地方의 村落에 存在하는 檢査所 内部와 外部가 壁에 依하여 完全히 隔離되어야하며

2) 一頭式 서로 接觸되지 않도록 二重 鐵網으로 隔離收容하고 칸을 지워 齒牙, 足 및 발톱을 傷하지 않도록 한다.

3) 檢査中의 犬은 規程에 依하여 一定한 運動을 一頭式 시켜야하며 이때에 他動物과 接觸시켜서는 안 된다.

4) 個體別로 性格에 맞는 寢所를 提供하여야 한다.

5) 消毒을 實施하기 힘들거나 消毒하지 아니한 物品을 계留場內에서 使用할수 없음.

6) 出入門 또는 出入口는 恒時 자물쇠로 감겨 두어야함.

7) 政府動物 檢査官은 檢査中의 動物에 對한 모-든 監督을 할수있는 權限을 가지고 있음.

8) 檢査官, 指定管理人 및 許用받은 訪問客만 檢査中인 犬猫를 訪問 할수있다.

9) 出產, 羅病, 斃死時는 即時 檢査官에 報告된다.

10) 檢疫中인 犬이나 猫에 咬傷이나 傷處를 받은 사람은 狂犬病 豫防에 必要한 處置를 받는다. 사자 虎 등의 特殊動物은 直接 動物園에서 이와같은 檢疫을 받는다.

㊤ 家禽輸入 檢疫

愛蘭國으로부터의 家禽은 無條件으로 輸入이 許可되고 있으며 濠州, 뉴지랜드, 丁抹, 노르웨이, 瑞典으로부터의 家禽은 12日 以上の 檢疫을 輸出國에서 畢하여야 輸入이 許可되고 있습니다.

其他 地域으로부터의 輸入은 1963年初까지 禁止되어 있었으나 現在는 適該한 檢疫條件附로 許容하고 있습니다.

檢疫期間의 決定은 여러 事情을 考慮하여야하나 通常 鷄에 對하여는 4~6個月, 오리에 對하여는 2個月 七面鳥는 7~9個月間을 家禽檢疫所에서 檢疫을 받아야 하며 檢疫中의 檢疫手數料, 飼養管理費는 荷主가 負擔하여야 합니다.

家禽專用 檢疫所는 7個所가 있으며 이는 農林省의 許可를 받은 것들입니다.

다음과같은 規定下에 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1) 계留舍는 種卵이나 家禽의 到着하기前 3個月間 使用된적이 없어야함.

2) 半經 半마일 區域內에 家禽의 飼育이 없는곳

3) 分離된 一個 鷄舍當 一件의 檢疫物만을 收容한다.

4) 檢疫 鷄舍로부터 最少 50휘트 떨어진곳에 壁을 쌓아 隔離施設을 하여야함.

5) 檢疫 區域內의 出入을 制限하고 出入者의 衣服 고무長靴等은 消毒한 것이어야 하며, 出入國에 消毒服 및 長靴를 備置하여 入所時 使用하였다가 出所時는 벗어놓아야 한다.

6) 糞은 檢疫이 終結될때까지 搬出하지 못하여 搬出時는 消毒을 實施한다.

7) 鷄舍는 家禽이 生長할수 있도록 커야하며 野生動物 및 害虫의 侵入防止 施設이 있어야함. 例를들면 窓門은 半인치 짜리 鐵網으로 막고 모든門은 자물쇠로 채워야 한다.

8) 輸入種卵의 부화실은 檢疫所內에 位置하며 手洗 및 解體檢査 施設이 있어야함.

9) 燒却 施設이 있어야함.

10) 檢疫所는 農林部 當局의 完全한 監督을 받으며 檢疫官은 定期的으로 檢疫所를 巡視한다.

2. 輸出檢疫 現況

英國은 西紀1920年에 無自覺한 牛輸入商人에 依하여

輸出된 牛에서 口蹄疫이 發生된 以來 런던市 阜頭 및 近郊에 檢疫所를 設置하고 輸出되는 모—든 牛를 繫留 檢疫하고 있으며 그實施 狀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5里 地域內의 牛 및 過去 3個月間 牛疫 및 牛肺疫이 發生한 例가없는 地域의 牛단 檢疫所에 繫留한다.

나. 所定의 期間을 繫留檢疫한後 牛는 遲滯없이 般積 輸出됩니다.

2個所의 檢疫所가 設置되어 있으며 當初의 檢疫所는 戰爭中 爆擊에 依하여 破壞되어 1950年 6월에 新築된것입니다.

各種 檢疫所는 緬羊의 藥浴用水槽 및 牛用藥品 撒布臺가 施設되어 있습니다.

다. 檢疫中인 動物은 牛 및 豚은 消毒藥이 撒布되고 緬羊은 藥浴槽에서 藥浴됩니다.

3. 畜產物 檢疫 現況

世界 全域으로부터 輸入되는 山羊毛와 에지푸트나 스—단에서 或은 이나라를 經由한 毛類는 國內工場에서 재처리된後 輸出됩니다.

其他 모데야, 豚毛, 馬牛毛 等은 輸入者가 리바올市에 있는 政府毛類 消毒場에 送付하여 炭疽菌에 對한 消毒을 받아야 합니다. 40°C 內外의 溫度下에 다음 各過程에 따라 10分間式 處理하여야 합니다.

1) 0.25~0.3% 濃度の 소—다수에 浸漬

2) 비누물에 浸漬

3) 호루무아루메 하이드液에 浸漬

4) 清水로 水洗

이와같은 過程으로 處理된 毛類는 乾熱空氣中에서 乾燥되어 約 200kg 무게 單位로 包裝합니다.

輸入檢疫 證明書는 消毒 룯드別로 發行됩니다. 英國은 1957年에 公布된 動物 疾病法에 依하여 牛, 緬羊, 豚, 山羊, 家禽은 動物이나 家禽의 屍死體가 混雜되어 있는 不潔한 生飼料를 給飼하는 것은 禁止되어 있으며 必히 1時間 以上 煮沸된 殘飯만으로 飼育토록 規定되어 있습니다.

象牙海岸·이나라는 1933年에 輸出入動物 檢疫法이 制定되어 現在 施行中에 있습니다.

檢疫所를 別途로 施設한것은 없고 其時 其時 農林省 當局 指示에 依하여 必要한 檢疫措置를 實施하고 있습니다.

카나다·이나라에 輸入되는 모—든家畜 및 畜產物은 動物傳染病法에 依하여 健康與否를 確認한後에 輸入이 許容되고 있습니다. 牛의 輸入에 있어서는 美國을 除外한 其他地域으로부터는 原產地國家에서 過去 18個月

間 口蹄疫이나 牛疫이 발생된 事實이 없다고 캐나다政府가 認定한 나라에 한하여 그때그때 許可를 得한後 輸入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美國을 除外한 其他地域으로부터 輸入되는 牛는 캐나다政府의 要請에 依하여 原產地國家에서 一定한 期間의 豫備檢疫을 畢한다음 캐나다에 到着되면 再次 30日間을 動物檢疫所에 繫留하여 結核, 부루세라病, 假性結核等的 檢査를 받으면서 檢疫을 畢하여야 합니다.

美國, 뉴-지랜드 및 濠洲以外的 國家로부터 商品으로서 輸入되는 乾草, 藁, 其他 傳染病 媒介의 憂慮가 있는 生土壤等은 輸出國政府가 發行한 消毒證明書를 携帶하여야하며 이證明書의 發行節次 및 內容은 事前에 캐나다政府에 依하여 承認을 받은것이어야 합니다. 現在 캐나다政府는 口蹄疫 및 牛疫의 發生이없다고 認定하고 있는나라는 美國, 濠洲, 뉴-지랜드, 愛蘭, 노르웨이, 아이스린드 및 캐나다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輸入되는 모-든家畜은 必히 船艙에 依하여 運送되어야 하며 더우기 船海中에는 他國을 經由하지 말고 直船하여야 합니다.

이나라에 輸入되는 犬에 對하여는 3個月間 檢疫所에서 繫留檢疫을 實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英國, 北部 愛蘭, 濠洲, 뉴-지랜드, 버-뮤다, 자마이카, 和蘭, 마하마, 아이스린드, 丁抹, 노르웨이, 瑞典, 오-스트리아 等地로부터 輸入되는 境遇에는 狂犬病豫防注射實施證明書와 健康診斷書를 携帶하였을때에는 繫留檢疫은 省略하고 있습니다. 한便 이나라의 輸出檢疫要領中 特殊한 것을 拔取하여 말씀드릴것 같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輸出되는 모-든動物은 生産地에서 獸醫官의 檢査를 畢한後 移動되어 船積直前に 港口에서 再次 獸醫官의 檢査를 畢하지 아니하면 輸出이 許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輸出코자하는 動物은 法에 依하여 船積前 12時間以前에 船積港에 到着되어 야하며 거기서 充分한 休憩를 取하는 同時 檢疫獸醫官에 依하여 最終의인 再檢疫을 畢한後 船積輸出됩니다. 또한 모-든檢査는 正確을 期하기 爲하여 晝間에 한하여 實施하도록 法으로서 規定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放線菌症에 罹患된 動物 또는 튜벨크린 反應成績이 陽性인 動物 또는 부루세라 血清反應成績이 陽性인 動物이라 할 지라도 輸入國側의 權威있는 當局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는 캐나다政府의 特別許可를 받아 輸出이 許容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나라는 牛에 對하여 부루세라 病統制를 爲하여 부루세라 아보-루투스 19型의 犢牛豫防注射을 實施하고있는데 對象犢牛의 年齡範圍를 美國은 生後 4箇月齡부터 8箇月齡까지를 對象으로하고 있는데 比하여 이나라는 生後 4箇月齡부터 11箇月齡까지의 犢牛에 實施하고 있는 點도 重要한 參考事項이될 것으로 믿읍니다.

#### 4 結 尾

以上 우리나라와 外國의 檢疫實施 現況을 말씀드렸으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여야할일 또는 家畜이나 畜產物을 輸出入하는 本에게 當부하고 싶은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나라는 畜產振興上에 決定的인 支障을 招來하는 口蹄疫, 牛肺疫, 牛疫의 侵入을 豫防하는데 斷乎한 措置를 繼續 取하여야 할 것임니다.

나 事情이 許諾하는 한 國內에서 發生되고 있는 家畜傳染病에 對한 發生抑制方法과 根絶에 對한 綜合的인 年次的인 長期 防疫計劃을 樹立하여야 하며

다. 家畜이나 畜產物을 輸出하는 業者는 우리나라의 衛生水準이나 風習을 基準으로 삼지 말고 購入國側의 水準을 念頭에 두고 事業을 推進하여야 할 것이며

라. 結核症, 부루세라病 等に 罹患된 家畜도 輸入國이 要求만하면 輸出하고 있듯이 어느 나라나 輸出檢疫은 輸入國보다 훨씬簡易하게 實施함이 慣例임으로 家畜을 輸入코져 할때에는 農林部나 外務部 通商局을 通하여 事前에 充分한 家畜傳染病에 對한 調査가 끝난後 輸入手續에 着手토록 할 것이며

마. 動物을 取扱할때에는 人道的이며 文化人다운 動物愛護精神으로 對하여 우리나라 國民의 文化水準을 國內 및 國外에 周知시키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에 關하여는 海外的 몇몇 나라의 家畜의 人道的 屠殺이 法律化되어 施行되고 있으며 動物虐待(학대)防止 運動이 活潑히 展開되고 있는 點은 特히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5. 輸出動物에 生毒豫防 注射藥을 接種하는데 關하여 國際間에 物議가 漸高되고 있으므로 이에 關한 漸進的인 對備策을 講究하여 구과와 地域等的인 對外輸出에 支障을 招來하지 아니하도록 豫備的인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것이다. <筆者=農林部家畜衛生課勤務>